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6
----------	-----

제출년월일 : 2006. 5. 26.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2005. 11. 15, 고성공룡전시관이 제1종 공룡박물관 등록으로 국립공원과 공룡박물관을 분리하여 관리하며, 기타 비효율적인 요금사용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에 관한 규정을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에서 만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로 변경(안 제3조)
- 나.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 상이한 항목 수정 (안 제5조, 제7조 및 제21조)
- 다. 국립공원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서식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함. (안 제17조)
- 라. 입장료 등의 면제규정을 입장료 면제로 수정 (안 제18조)
- 마. 시설사용료 면제규정 추가 신설 (안 제19조)
- 바. 금지행위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안 제26조)
- 사. 비효율적인 주차장 시설사용료의 효율적으로 개정 및 공룡전시관 관련부분 삭제 (안 별표3)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6-201호(2006. 3.16. ~ 2006. 4. 4.)
 - 의견 제출사항 없음
- 나. 관계법령 및 근거
 - 자연공원법 제37조제3항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만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소년 :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4. 일반인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자
9. 점용료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제5조 중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9조 및 제20조”를 “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동조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판매하여 징수한다.
- ⑥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⑧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입장료 등의 면제”를 “입장료 면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입장료”로 하며,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4. 만 2세 이하인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시설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인 경우 전부면제
2.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인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경승용차(800cc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21조제1항 중 “법 제27조”를 “법 제38조”로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로 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금지행위) 공원구역 내 금지행위는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까지의 행위를 말하며 제9호의 행위 중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원구역 내 음주·가무행위
2. 공원구역 내의 무속행위

제1조 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제15조 중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별표2의 구분란 중 “청소년·학생·군인”을 “청소년·군인”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시설사용료 요금표(제17조제2항관련)

(단위 : 원)

시 설	구 분	요 금	비 고	
주 차 장	이륜 차	500		
	승용 차	2,000		
	승합 차	15인승 이하	2,000	
		15인승 초과	3,000	
	화물 차	1톤 미만	2,000	
		1톤 이상	3,000	
샤 위 장	일반인, 군인, 청소년	1,000	1회당	
	어린이	500	1회당	
야 영 장	소형 천막	2,000		
	대형 천막	4,000		

※ 차량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며,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미만 총중량 3톤 미만, 최대적재량 1톤 이상 총중량 3톤 이상으로 구분한다.

※ 소형천막은 4인용 이하, 5인용 이상이면 대형천막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p> <p>2.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인 자</p> <p>3. (생 략)</p> <p>4. 일반인 :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p> <p>5. 노인 : 65세이상인 자</p> <p>6 ~ 8. (생 략)</p> <p>9. 점용료 : 법 제 2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p>	<p>제3조(정의) -----</p> <p>-----</p> <p>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만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p> <p>2. 청소년 :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p> <p>3. (현행과 같음)</p> <p>4. 일반인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p> <p>5.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자</p> <p>6 ~ 8. (현행과 같음)</p> <p>9. 점용료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p>
<p>제5조(공원관리 등) ①군수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을 유지관리한다.</p> <p>② (생 략)</p>	<p>제5조(공원관리 등) ①----- 법 제19조-----</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설치)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7조(설치) 법 제9조 및 제10조-----</p> <p>-----</p> <p>---</p>
<p>제1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p> <p>① ~ ② (생 략)</p> <p>③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권의 서식은 별지제1호서식과 같다.</p> <p>④ ~ ⑤ (생 략)</p> <p>⑥시설사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p> <p>⑦ (생 략)</p> <p><신 설></p>	<p>제1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p> <p>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입장료는 매표소에서 판매하여 징수한다.</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서식 등에 관한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⑦ (현행과 같음)</p> <p>⑧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고성군 (이하“군”이라 한다)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p>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8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u>입장료 및 시설사용료</u>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4. <u>6세이하인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이상</u>의 경로우대자, <u>장애인복지법</u>에 의한 장애인</p> <p>5. <u>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 제2항</u> 각호의 자</p> <p>6 ~ 7. (생략)</p> <p>② (생략)</p>	<p>제18조(입장료 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u>입장료</u>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만 2세 이하인 어린이</u>-----<u>만 65세이상의</u>-----「<u>장애인복지법</u>」-----</p> <p>5.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p> <p>6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시설사용료 감면) <u>군수는 경승용차(800cc이하)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u></p>	<p>제19조(시설사용료 감면)군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p> <p>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인인 경우 전부 감면</u></p> <p>2. <u>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인 경우 100분의 50감면</u></p> <p>3. <u>경승용차(800cc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감면</u></p>
<p>제21조(점용료 부과·징수) ①군수는 <u>법 제27조</u>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동법시행규칙 제18조</u>에 규정 효율을 기준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 ⑥ (생략)</p>	<p>제21조(점용료 부과·징수) ①----- <u>법 제38조</u>-----</p> <p>----- <u>동법 시행규칙 제26조</u>-----</p> <p>-----</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26조(금지행위) <u>공원구역 내 금지행위는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u>까지의 행위를 말하며 제9호의 행위 중 다른 사람에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공원구역 내 음주·가무행위</u> <u>2. 공원구역 내의 무속행위</u> <p>제27조 (현행 26조와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입 장 요 금					[별표2] 입 장 요 금					
구 분	일반인	청소년·학생·군인	어린이		구 분	일반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별표3] 시설사용료 요금표					[별표3] 시설사용료 요금표					
시설	구분		당일	체류 (숙박)	비 고	시설	구분		요금	비 고
주차장	이륜차		500	1,000		주차장	이륜차		500	
	승용차	영업용	1,000	1,500			승용차		2,000	
		비영업용	2,000	3,000			승합차	15인승 이하	2,000	
	버스	마이크로 버스	2,000	4,000				15인승 초과	3,000	
		비정기 버스	3,000	5,000			화물차	1톤 미만	2,000	
	화물차	4톤미만	1,500	3,000				1톤 이상	3,000	
	4톤이상	2,000	4,000							
야영장	소형천막		2,000		1일당	야영장	소형천막		2,000	
	대형천막		4,000		1일당		대형천막		4,000	
공통전시관	개 인	일반인	3,000			박	체			
		군인, 청소년, 학생	2,000							
		어린이	1,500							
	단 체	일반인	2,500							
		군인, 청소년, 학생	1,500							
		어린이	1,000							
샤워장	일반인, 군인, 청소년, 학생		1,000		1회당	샤워장	일반인, 군인, 청소년		1,000	1회당
	어린이		500		1회당		어린이		500	1회당
<p>※ 일반인이라함은 19세이상 64세이하로서 군인, 청소년, 학생이외의 자를 말한다. 학생이라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 포함)을 말한다. 어린이라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단체라함은 30인이상 단체의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p>					<p>※ 차량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며,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미만 총중량 3톤 미만, 최대적재량 1톤 이상 총중량 3톤 이상으로 구분한다. ※ 소형천막은 4인용 이하, 5인용 이상이면 대형천막을 말한다.</p>					